

대 법 원

제 1 부

[2019두32252]

사 건 명 :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
원 고 : 원고1

부산 해운대구 이하 생략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A

담당변호사 변호사1

원고보조참가인 : 원고2

서울 강남구 이하 생략

피 고 : 수협중앙회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B

담당변호사 변호사2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,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.

이 유
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,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1, 대법관2, 대법관3, 대법관4